

화재조사의 협력방안 모색: 민관파트너십이론을 중심으로

이 란 희* · 공 하 성**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A Cooperating Plan of Fire Investigation: Focu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ory

Ranny Lee* · Ha-Sung Kong**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Hanyang Univ. · **Dept. of Fire Safety, Kyungil Univ.

Abstract

This study is to search cooperation plan about fire investigation based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Especially focused on the partnership with 4 sector; the academic world, insurance sector, industrial world, professionalist of private fire investigation. In conclusion, Firstly a partnership with the academic world should have courses or school subject extensions related to fire investigation. Secondly, a partnership with insurance sector should secure trust through unifying estimate standard about the origin of damage. Thirdly, A partnership with industrial company is presented making collaboration team to investigate the fire investigation. Lastly, the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professionalist related to fire investigation should strengthen credibility and expertise.

Keywords : Public-Private Partnership, Fire Investigation, Cooperation Plan

1. 서 론

「소방기본법」 제1조는 “이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화재의 예방·경계와 관련해서는 「소방기본법」 과 「형법」의 규정에, 「소방기본법」 제29조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규정을 두고 있고, 제32조는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1], 「형법」 제164조~176조는 ‘방화와 실화의 죄’의 규정에 근거 화재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둔 바 있다[2]. 이와 같이, 법제도는 화재조사의 중요성과 함께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화재조사업무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 발생한 화재사태에 대

한 조사를 통해 연구 분석하여, 예방대책과 진압대책으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 유사화재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형사상 방·실화의 책임, 민사상 피해배상 및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증거자료로도 활용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화재발생건수는 43,249건이며, 인명피해는 2,223명, 재산피해액은 289,526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0년 전의 31,372건에 비하여 화재발생건수가 약 37% 증가한 수치이다[3]. 이처럼 화재발생이 지속적이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중요한 화재조사는 원인에 대한 엄밀성이 담보되고, 화재조사의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기관과 경찰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법규상 화재조사권은 소방에, 화재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있어 화재조사는 양 기관이 인식의 공유와 함께 협력의 정도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Corresponding Author : Ha-Sung Kong, Dept. of Fire Safety, Kyungil Univ.

50 Gamasilgil, Hayangup, Gyeongsan, Gyeongbuk, O · P : 053-600-5402, E-mail: kiul19@naver.com

Received January 20, 2014; Revision Received March 19, 2014; Accepted March 21, 2014.

실제 2008년 7월 25일 경기도 용인시의 T고시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화재조사와 관련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당시 발생한 화재조사와 관련해서 각 기관 조사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소방은 물리적으로 발화원의 잔해를 남기지 않는 방화형태를 확인했다며 화재의 원인을 방화로 추정했고 경찰은 냉장고 및 TV전원코드의 절연손상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제기하며 전기합선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4].

이처럼 화재조사에 대한 다른 결과는 어느 일방이 틀릴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 화재조사 및 기관에 대한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중복 조사에 따른 공공재로서의 비용증가도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담보되어야 한다.

화재조사 및 수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 기존문헌은 화재조사 및 수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춘하 외, 2001; 김형두, 2007; 이의평, 2013)와 화재조사자 교과목 및 육성과 관련된 연구(최돈묵 외, 2007; 고기봉 외, 2009; 최진만 외, 2011)가 존재하며, 기타 국가간 화재 운영체제 연구와 화재감식 등에 관한 연구가 존재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춘하 외(2001)는 ‘화재조사 및 수사업무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서 화재조사의 전담부서 설치, 화재조사원의 충분한 확보 및 전문성 강화, 화재감식 연구시설의 확충, 방화 및 실화법에 대한 소방시설 및 안전교육을 실시가 필요함을 [5], 김형두(2007)는 ‘현행 화재조사 및 수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연구를 통해 화재조사·수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과학적 화재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장비 구비, 화재조사와 수사에 있어 미비한 법 제도 개선, 화재조사 소방공무원에게도 수사권 부여를 [6], 이의평(2013)은 ‘화재원인 판정 오류 원인의 분석’에서 화재원인 판정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조사요원의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 상급기관 등의 재촉, 속도대기식 조사, 조사요원의 적극성 부족, 민간 화재조사전문가의 참여 제한 등을 [7], 최돈묵 외(2007)는 ‘화재조사자의 교육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화재조사자 양성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반복적 재교육을 제시하였다[8]. 고기봉 외(2009)는 ‘화재조사전문교육 및 자격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현행 중앙소방학교를 평생교육체제로 전환, 대학의 학위과정과 연계, 화재조사관자격증제도를 외부에 개방, 학습수준별로 나누어 운영을 [9], 공하성 외(2010)는 ‘화재감식의 형사법적 연구’를 통해 화재관계조사법 및 하위법규의 제정, 화재조사를 위한 합동위원회의 구성, 화재감식정비 등의 현대화, 화재감식 전문교육의 내실화, 부처간 이기주의 극복 등을 제안하였다[10]. 최진만 외(2011)는 ‘화재조사 관련 교과

목의 확대와 개편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화재조사 관련 교과목의 확대 및 개편, 이론중심에서 실제 현상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 제공, 화재조사분야 화재조사론, 화재감식론으로 세분화, 국제화재폭발조사관 자격(CFEI) 취득 정도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11]. 또한 최진만 외(2011: 56)은 ‘한·중·일 화재조사 운영체제 비교연구’에서 긴급화재와 일반화재 보고기간을 30일로 표준화하고, 화재조사가 보고기간을 초과한 경우 지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관계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보관증과 자료반환증 서식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2]. 이상에서와 같이, 화재조사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존재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민관파트너십이론을 통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화재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재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민관파트너십이론을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민관파트너십의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관은 소방기관 및 경찰기관으로 한정하고, 민은 소방 업무 주요 행위자로 전문지식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학계, 화재피해액 관련 분석을 바탕으로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보험업계, 제품 성능개선 등의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민관파트너십 이론

2.1. 민관파트너십의 배경 및 장단점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하나의 조직형태이다. 따라서 파트너십의 형태는 다양하여 민과 관뿐만 아니라 관과 관, 민과 민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수준과 성격도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13]. 파트너십을 활용하게 되는 강점은 개별기관이나 조직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 얻어지는 성과보다 공동으로 추진하여 얻어지는 성과가 더 크다는 이점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사업추진방식이다[13][14].

한편, 민관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의 대상을 하나의 축에는 민(private)을, 다른 하나의 축에는 관(public)을 상징한 것으로, 관관, 민민의 형태보다 관의 특장점, 민의 특장점을 고려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민과 관의 입장에서 파트너십의 장단점을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Merits and demerit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17][18]

public	merit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mproving delivery of public services 2. taking more information from nation people 3. more efficiency various kinds of programs 4. previous testing about new technical application 5. proper training offer from private specialist
	demerit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nderstanding government way's inefficiency 2. the needs of public services beyond government's ability 3. weakening government's authority and credibility
private	merit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ore accessible than policy determining process 2. easily available specialty research installation and specialists 3. more accessible new technic 4. private ability and uphold development from technic and model
	demerit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xpecting bureaucratic controlcollusion connection with government, 2. more bureaucratic than government 3. losing private self-regulation and independence 4. a downfall of government's service delivery 5. worrying government's intercepting prviate performance 6. accelerated government's inefficiency

2.2. 민관파트너십의 유형

Gidron, Kramer & Salamon은 사회복지체제와 관련하여 네 가지 모형을 설정하고 서비스의 공급과 재정 기능의 두 가지 차원으로 민과 관간의 다양한 협력체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15][16]. 첫째, 정부주도 모형으로, 관이 재정과 서비스 분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민간주도모형으로 정부주도 모형과는 달리, 공급과 재정보호 기능을 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 이원모형으로 재정과 서비스제공 두 부분에서 민과 관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이 독자적·독립적 영역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관심사인 상호협력모형으로 민과 관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관은 주로 재정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민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화재조사의 실태 및 문제점

3.1 화재조사 법체계의 분산 및 모호성

최근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원인 및 피해 조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행 「소방기본법」에

는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중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질문권과 경찰공무원·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조항 등 일부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시행규칙과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 박덕흠의원 외 11명은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19].

한국은 화재조사를 포함한 방·실화범 수사업무에 관하여 단일법으로 존재하지 않고 관련된 여러 법규범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즉, 소방기관에서는 「소방기본법」 제5장의 근거규정에 의해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경찰기관에서는 「형법」 제13장, 「형사소송법」 제24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있고 특별법으로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3호, 「산림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 그리고 훈령으로 범죄수사규칙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법규범의 형식으로 인하여 화재조사를 포함한 효율적인 범죄수사업무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법으로 소방기관에 적용되는 화재조사관계 법령은 소방기관의 소화나 화재원인조사 등 특수 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화재조사에 관한 모법으로서 개괄적,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경찰의 방·실화범 수사를 목적으로 한 화재조사업무에 적용하기에도 사실상 곤란하다. 이는 화재조사 법체계를 소방기관 또는 경찰기관에 독점

권을 가지도록 개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화재조사 관련법의 하위입법을 마련하여 세부사항을 위임,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0].

3.2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부족

한국 화재조사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법 과학의 전반적인 진보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화재조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 부분이다. 단순히 전문인력 부재를 타하기에는 한국 법 과학의 진보수준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경제원리에 입각한 인력 흐름이라면 수요가 창출되어야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실정을 보면 전문가 집단 등에서 전문 인력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능동적인 정책적 변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 현장 하나하나가 살인사건이나 마약 등과 연관된 강력사건인 범죄 현장일 수도 있고, 동일한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다수의 조사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몇 군데 전문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화재조사가 전기·가스·화학 등 많은 분야의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교육생의 자질, 교육과정 등을 볼 때 교육 이수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경향이 많고, 교육 수료 후 화재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21][22]. 다시 말해 화재조사요원은 많지만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소방기관의 경우 소방위 계급에 승진한 직원들이 순환보직직으로 화재조사를 맡고 있어서 전문성이나 경험과는 거리가 있다[23].

3.3 소방기관, 경찰기관 및 보험업계의 화재 피해액 상이

동일한 화재에 있어서 소방기관, 경찰기관 및 보험업계가 화재피해액이 각기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2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각 기관별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소방기관은 ‘화재조

사 및 보고규정’ 제34조[24]에 의해 화재 당시의 피해 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건축 또는 재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따르도록 되어있다[25]. 그러나 경찰기관의 경우에는 관련자 진술 및 소방서 피해조사내용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손해사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 ‘주택화재보험 약관 및 화재보험 보통약관’, ‘표준보험요율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찰기관이나 보험업계의 화재피해액이 소방기관의 피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26][27]. 실제 2013년 1월 발생한 서울 중구 광복동의 ○○빌딩화재에서 화재피해액을 소방기관은 475천원, 보험업계는 1,090천원으로 산정하여 소방기관과 보험업계가 2.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28].

둘째, 조사요원의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화재현장은 열, 연기, 유해가스 등의 노출 및 위험한 현상상황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요원의 적극성이 부족하다 보면 화재조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이로 인해 화재 피해액 산정에도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29].

3.4 가전제품에 대한 이해부족

한국의 가전제품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가전제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기는 1970년대부터이지만 기업들은 엄청난 속도로 가전제품들을 발전시켜 왔고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전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가전제품의 원인으로 인한 화재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29]. 또한 주택화재에 있어서는 가전제품이 주요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30]. 제품의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내부회로도 화재조사요원이 간단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또한 어떤 제품은 제품의 용도조차 알기 힘든 경우도 있다. 새로운 가전제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화재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¹⁾

1) 전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화재조사요원 103명을 대상으로 ‘가전제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화재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경험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90명(87%)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2013. 11.04~11.27 이메일을 통한 설문결과)

3.5 민간 화재조사전문가의 참여제한

민간 화재조사전문가는 아직까지 전문적인 법인이거나 공식적인 기관이 없고 다양한 업종에 산재해 있으므로 인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보험회사나 손해사정회사는 물론 대학교수 중에도 국제적인 수준의 화재조사전문가가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등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서 화재조사에 대한 민간 화재조사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화재조사전문가의 참여 제한은 거의 모든 화재조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간화재조사전문가가 화재조사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특정한 또는 특정집단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3]. 소방기관 또는 경찰기관 등의 국가기관이 화재원인 판정에 오류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화재현장에 민간 화재조사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31].

전국의 화재조사인력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present condition of fire investigation manpower[32][33]

organization	manpower(pers.)
agency of fire fighting	fire investigation member: 842
agency of police force	fire identification member: 199
	fire identification professional member : 62
Total	1,103

4. 협력방안

4.1 학계와의 파트너십

4.1.1 화재조사 및 방·실화범 수사업무에 관한 단일법 구성

화재조사는 공신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화재원인 및 피해사항에 대한 분쟁과 법정에서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화재원인

및 관계인, 피해 조사의 목적, 용어정의, 강제조사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 벌칙 등 ②방·실화범에 대한 형법의 특례규정 ③화재조사법 시행령 등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④화재원인조사를 포함한 화재조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⑤화재현장조사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화재조사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 각종 제반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인 학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화재조사 및 방·실화범 수사업무에 관한 단일법을 구성하여 화재조사업무의 집행력을 제고시켜 시행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9][34]. 한편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화재조사업무를 통해 화재조사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35].

4.1.2 화재조사관련 학과 및 전문대학원 설립

현 시점에서 상용화될 화재조사, 감정시장에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화재조사, 감정을 독립 학문으로 다루어지는 대학의 학과와 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31]. 대학에서 정규학과를 신설하여 법 과학 전반과 화재조사 능력을 배양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화재조사 전문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의 학과개설이 어려울시 기존의 1~2과목 개설되어 있는 화재조사 관련과목을 늘려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내용은 난이도를 단계별로 조절하여 획일적인 집단 교육 보다는 전공에 맞는 전기전공, 기계전공, 화학전공 등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4.2 보험업계와의 파트너십

현행 화재피해액 산정방식은 공공기관인 소방기관과 경찰기관 그리고 보험업체인 보험회사가 각기 달라 혼란이 야기된다. 이로 인해 화재피해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은 화재피해액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7]. 국민의 화재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보험업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화재피해액 산정방법을 보다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화재피해액 산정기준과 방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34]. 이로써 보험업계는 화재관련 피해요인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보험수가 조정 등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성장이 가능하다[35].

4.3 산업계와의 파트너십

화재현장이 범죄와 관련이 없고 화재원인이 산업계 제품과 관련이 있을 경우 소방기관은 산업계 화재조사팀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화재조사 수행시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산업계는 상호협력력을 통해 공공기관은 보다 정교한 화재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고 산업계는 제품의 성능개선 등 기업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화재조사의 선진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범익을 달성할 수 있고 산업계는 물건을 보다 잘 만들어 기술발전과 수출증대 등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 할 수 있다[36].

4.4 민간 화재조사전문가와의 파트너십

한국의 민간화재조사전문가 또는 단체는 실태조사 결과 한국화재과학연구소, J대학교 교수 등 개인 또는 일부단체가 화재조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화재감식평가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의 도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재조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은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 조사반과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 그리고 법인, 손해사정업체가 일부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민간 화재조사가 아닌 보험과 연관된 방화 범죄 증거 확보가 목적이며, 확보된 증거는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의 형태로 민원을 접수하는 자료로 쓰이거나, 민사 재판의 증거자료 그리고 민간 화재조사전문가의 피해자 및 민원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는 공공기관이 화재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민간 화재조사 전문가와도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화재조사에 대한 신뢰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민관파트너십의 구성을 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민간 화재조사전문가와의 파트너십으로 구분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학계와는 대학에서 화재조사관련 교과목 증설 또는 학과신설로 인한 화재조사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공기관에서는 화재조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화재조사 업무를 통해 화재공학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보험업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을 공공기관과 통일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보

험업계의 성장이 가능하다. 셋째, 산업계와는 산업계 화재조사팀과 공동으로 화재조사를 실시하여 화재조사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산업계는 제품 성능개선 등의 기업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화재조사전문가와는 화재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민간 조사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화재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 화재조사의 실태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파트너십의 다양한 유형과 범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화재조사라는 현상을 정확히 기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설명의 입증의 범칙에서 다소 논리적 흠결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설명적 조사연구를 통해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연구과제로서 민관파트너십과 함께 소방기관과 경찰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관과 관의 파트너십방안, 산학연 파트너십, 산학관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방안도 계속 연구되어지기를 기대한다.

6. References

- [1] A Fundamental Law of the Prevention and Extinction of Fires, Article 5 (Fire Investigation)
- [2] The Criminal Law Act, Article 13 (crime of arson and accidental act)
- [3]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12), Fire Statistical Yearbook, 540 Fire Prevention News.(2009.5.27.)
- [4] Chun-Ha Lee, Oh-Han Kweon, Sang-Haw Nam (2001), "A Study on Problems and Solutions of Fire Investigation in Korean Fire Administration."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15, No. 1, 116
- [5] Hyung-Doo. Kim(2007),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Existing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21, No. 1, 37
- [6] Eui-pyeong Lee(2013), "Cause Analysis of Errors in the Judgement of Fire Causes." Journal of KOSHAM, Vol. 13, No. 2, 209
- [7] Don-Mook Choi, Chang-Woo Park, Se-Jin In, Chang-Woo Lee(2007), "A Study on the Actual Education Condition and Improvement Program of Fire Investigation."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21, No. 4, 72
- [8] Gi-Bong Ko, Si-Young Lee(2009), "A Study on Improvement of Professional Fire Investigation

- Edu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23, No. 5, 32
- [9] Ha-Sung Kong, Su-Youl Kim(2010), “Criminal Legal Study of Fire Investigation.”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24, No. 5, 6-9
- [10] Jin-Man Choi, Kil-Hwan Kim, Chang-Woo Lee, Don-Mook Choi(2011), “A Study on Necessity of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Courses Related to Fire Investigation.”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25, No. 3, 42
- [11] Jin-Man Choi, Kil-Hwan Kim(2011). “A Study Compari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Fire Investigation Operating System.”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25, No. 4, 56
- [12] Tae-Young Park(2008), “A Strengthening Pla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ocused on the Volunteer Center Administration.” J.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 14, No. 1, 43
- [13] Hyeon-Seo Park(2002),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Voluntary Partnerships for Watershed Management, Republic of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 19
- [14] Suk-Joo Jo, Pil-Doo Kim(2000), “A Plan for the Policy Participation of the Local NGO for Local Governing,”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ocal Administration, 229-244
- [15] Tae-Young Park(2008), “A Strengthening Pla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ocused on the Volunteer Center Administration.” J.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 14, No. 1, 47
- [16] Soo-Hyeon Kim, Eeun-Cheol Park(2000), “The Case Study on the Partnership betwe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Seoul Institute, 35
- [17] Tae-Young Park(2008), “A Strengthening Pla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ocused on the Volunteer Center Administration.” J.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 14, No. 1, 49
- [18] <http://pokr.kr/bill/1906448#contents>
- [19] Ha-Sung Kong, Su-Youl Kim(2010), “Criminal Legal Study of Fire Investigation.”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24, No. 5, 5
- [20] Eui-pyeong Lee(2013), “Cause Analysis of Errors in the Judgement of Fire Causes”, Journal of KOSHAM, Vol. 13, No. 2, 213
- [21] In-Beom Lee, Ha-Sung Kong(2008), “A Study on the Problem and amelioration of Fire identification System in Korea.” J. of The Korean Investigation of Plant Engineering, Vol. 13, No. 4, 39
- [22] Eui-pyeong Lee(2013), “Cause Analysis of Errors in the Judgement of Fire Causes”, Journal of KOSHAM, Vol. 13, No. 2, 214
- [23] Code of Fire Investigation and Reporting,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o. 229
- [24] Hyung-Doo. Kim(2007),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Existing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21, No. 1, 45
- [25] Chan-taik Jeong(2004), “A Study on the investigative System of Arson and Accidental Fire.” A Master’s Degree of Yonsei Univ., 86
- [26] Hyung-Doo Kim(2007),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Existing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21, No. 1, 46
- [27]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13). inside data
- [28]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728/56705769/1>
- [29] http://www.todaymoney.ca/newsframe/news_view.php?&cat1=special&no=628
- [30] Eui-pyeong Lee(2013), “A Study on Measures to Minimize Errors in the Judgment of Fire Causes”, Journal of KOSHAM, Vol. 13, No. 3, 145
- [31]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13), Internal data of Protective Security Research Division
- [32] National Police Agency(2013), Internal Data of Korea Police Scientific Investigation
- [33] Yong-Soo Mun, Ha-Sung Kong, Myoun-O Yoon(2008), “Research about Improvement Way of Fire Investigation System: Regarding Product Liability Responsibility Law.”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22, No. 5, 109-110
- [34] Hyung-Doo. Kim(2007),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Existing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21, No. 1, 49
- [35] Tae-Yeon H, Jae-Il Ko, Kuk-Mok Lim, Sung-I. Il. Ann(2005), “A Study on the Optimum Model of Fire Investigation in Private and Public Sector.” Proceedings of the Korea Investigation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183-184

저 자 소 개

이 란 회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의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2009), “자원봉사센터평가에 대한 메타평가”(2011),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2013)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자원봉사, 소방행정, 평가, 지방·도시행정 등이다. 현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강의교수 및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공 하 성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재난과학을 전공하였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화재소방학회 평의원,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간안전인증 평가위원, 전라남도 석유화학단지 및 원자력발전소 Simulation화 자문위원, 소방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국가기술자격시험 소방분야 출제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